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최 유



입법평가 연구 15-17-①-5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최 유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연구자 : 최 유(부연구위원) Choi, You

2015. 10. 31.





I. 배경 및 목적

- 서울특별시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
 - 향후 조례입법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입법평가를 제도화할 예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법규입 안심사기준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례입법에 있어서 사전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함
- 나후관리의 항목은 조직의 확대나 축소, 인원 및 예산의 증가나 감소, 주관부서의 의견, 언론기관 또는 학계 등의 의견,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등의 효과분석,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 과의 자치법규 반영, 법령개정 건의 등이 내용임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조례 중 대표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 가「서울특별시 조례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내용 및 결과
 이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Ⅲ. 기대 효과

서울특별시 개별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
 써, 조례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례입법평가의 근
 거가 되는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제어 : 사후적 입법평가, 조례입법평가, 서울특별시 조례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not enacted a municipal ordinance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its municipal ordinances.
 - It plans to enact a municipal ordinance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its municipal ordinances to institutionalize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Legislation of Municipal Statutes contains the Guidelines for the Examination of Bills for Municipal Statutes, according to which *ex-ante* evaluation and ex-post management have been performed in regard to legisl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 Included in the items of *ex-post* management are the extension or reduction of organization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personnel or a budget, opinions of main responsible agencies, opinions from mass media, academic circles, etc., analysis of effects, such as changes in citizens' lives and reactions, reporting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sults of enforcement, disclosure of results of evaluation, reflection of results of evaluation

in municipal statutes, and recommendation of amendment of statutes.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lect representative municipal ordinances necessary for evaluation, from among municipal ordinanc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n draw a conclusion by conducting legislative evaluation on each municipal ordin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valuation in the Guidelines for the Examination of Bills for Municipal Statutes, and furthermore propos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I. Major Content

-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major content.
- □ Details of respective legislative evaluations of municipal ordinanc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sults thereof.
 -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s subjected to legislative evaluations are as listed in the following:

Titles of Evaluated Municipal Ordinanc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on Youth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Juvenile Activity Promo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Devolu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Support for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of Seoul for Social Contribu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Support, Etc. for Promotion of Social Hous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afety Audit Ombudsm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No-Driving Day Program for Passenger Vehicles and Support for Mileage of Passenger Vehicl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on Public Transport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Public Child Care Cen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owing, Etc. of Vehicles Stopping or Parking Illegal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Permission to Occupy Roads for Use and the Collection of Fees for Occupancy and Use, Etc.

Ⅲ. Expected Effects

- □ It is expected to ensure practical effect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promot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future by conduct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s, proposing methods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presenting problems in the Guidelines for the Examination of Bills for Municipal Statutes, which is the basis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proposing the direction in supplementing the guidelines.
- Key Words :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목	차	

요 약 문
Abstract 7
제1장서론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15
제 1 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과 입법절차 15
1. 서울특별시 조례 현황
2. 조례입법과정의 개관
제 2 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30
1. 제정경과
2. 내 용
3. 특 징41
제 3 장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
제1절 서울특별시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기준43
제 2 절 서울특별시 개별조례 입법평가 45
1.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45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48

참고문헌~~~~133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조례가 계속 제정 되고 있다. 조례의 양적인 동시에 질적 증가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에 이전에 따른 위임조례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 지방 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에 따라 자치조례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례에 대한 양적 변화는 동시에 질적인 변화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특별시는 일찍이 조례입안에 있어서 자체심사기준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며,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등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입법적으로 한 발자국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요구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서의 조례의 동태적 입법변화 는 단순히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만이 아니라 제정에서부터 실효성을 갖춘 조례로 제정된 이후 주기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나타난 부작용을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정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짧은 연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에서의 입법평가분석지표를 일부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시사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가 현재 적용되고 있다. 또한「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올해인 2015년 5 월 6일 시행되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입안기준상의 일부기준 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특별시 조례 일부에 대한 규범적 입법평가를 하였다. 특히 지역적 특 성과 필요성 및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삼았 다. 또한 일부 조례는 위임사항의 위반이 의심되는 조례 등을 입법평 가의 대상으로 하였다.

제1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과 입법절차

제 2 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제 1 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과 입법절차

1. 서울특별시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례와 규칙에 관해서 자 치법규명으로 검색을 하면 658개의 조례와 규칙이 검색된다. 현재 홈 페이지에서는 시의회, 대변인, 서울혁신, 시민소통, 기획조정, 여성가 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기획, 마곡사업, 경제진흥, 복지건강, 교통, 기 후환경, 문화·체육·관광, 행정, 재무, 교육, 기술심사, 도시계획, 도 시안전, 주택, 푸른도시, 소방재난, 한강, 도시기반, 상수도, 기타 등으 로 분류하여 조례를 검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최근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7대 시의회와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8대 시의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 제9대 시의회에서는 개원한지 불과 14개월이 지난 현재 접수된 조례안이 이미 482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단순히 계산해 보아 2018년까지 6월까지 접수될 조례안은 1,650여 건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1> 서울의 조례통계2)

	접수된 조례안	가결된 조례안
3대 (1991년 7월 ~ 1995년 6월)	413건	395건
4대 (1995년 7월 ~ 1998년 6월)	324건	297건

²⁾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함, 검색일 2015. 9. 8.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generation_ num=009&startDate=2014-07-01&endDate=2015-09-08&startDay=&endDay=

제2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접수된 조례안	가결된 조례안
5대 (1998년 7월 ~ 2002년 6월)	543건	517건
6대 (2002년 7월 ~ 2006년 6월)	433건	410건
7대 (2006년 7월 ~ 2010년 6월)	725건	591건
8대 (2010년 7월 ~ 2014년 6월)	1025건	735건
9대 (2014년 7월 ~ 2015년 9월 현재)	482건	161건

앞으로 지방이양업무가 남아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양된 업무 이 외에도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내용의 자치조례들의 수 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현재까지 조례의 수와 양 및 그 내용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안이나 심의를 위한 지원인력이나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례입안 과 심의를 위한 제도와 인력 그리고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조례입법과정의 개관

1) 자치법규 입법관련 조례와 규칙

현재 서울특별시의 조례 제정에 있어서 입안과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 다. 이 조례는 2007년에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 조례 제정이전에 는 2002년 5월 20일에 제정한 서울특별시조례 제4003호인 「서울특별 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 글에서는 이 조례의 약칭을 자치법규조례로 한다.)는 서울특별시조례의 입안작성기준과 심 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본 조례의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

16

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즉, 입안 심사기준표의 내용이 자치법규 입법안의 작성기준이 된다. 또한 이렇 게 작성된 입법안을 서울특별시 내부나 시의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입 안심사기준표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2002년 제정 당시 본 조례는 모두 제5장, 22개 조문, 3개의 부칙으 로 구성되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표2> 서울특별시 자치법구	의 입법에	관한 조례	기 주요 내용
-----------------	-------	-------	---------

조 문	주 요 내 용
	 o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 고 입법과정의 참여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제1조(목적)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
	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규칙
	- 입법예고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
제2조(정의)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
	o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
제3조(기본원칙)	o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을 확보
	o 자치법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
	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자연스러운 표현

제 2 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조 문	주 요 내 용
제4조 (입법예고 대상)	 o 서울특별시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를 예고하여야 함 o 예외 -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 -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o 입법예고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 입법취지 - 입법 주요내용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방법)	 o 입법평가는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 공고 o 필요한 경우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o 입법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 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이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
제7조(예고기간)	o 입법예고 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 제출 o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제9조(공청회)	 이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일 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함,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해관계가 있는 단체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
제10조(협의 등)	 o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 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함

조 문	주 요 내 용
제11조 (입법안 작성)	 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 성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함 이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다음의 법제처의 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야 함 법률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일 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외래어와 외국어 등의 용어 정비 쉬운 문장, 명확한 문장, 간결한 문장 등으로 문장 정비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
제12조 (입법안 심사)	o 입법안은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함
제13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o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선별적인 입안심사기준 표에 따른 평가나 심사를 할 수 있음 o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 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함
제14조	o 삭제
제15조	0 삭제
제16조	o 삭제
제17조(전문)	 o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임 o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의결의 뜻을 기재하고 시장 이 서명후 직인을 찍고 연월일을 기입 o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면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
제18조 (규칙 등의 제출 등)	 이 시장은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다만, 규칙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이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제출에서 제외.

제 2 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조 문	주 요 내 용
	 o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규칙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o 전문위원은 규칙을 검토하고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함
제19조	o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
(공포번호)	o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제20조 (공포방법)	o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제21조(공포일)	o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함
제22조(시행일)	 o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제23조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이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 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긴급 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4조 (사전교육 등)	 o 시장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 계공무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25조 (자치법규 정비)	 이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별 표의 입안심시기준표의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 이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함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 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과 입법절차

조 문	주 요 내 용
제26조 (입법의견 제출)	 o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 제출 o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 경우 입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o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시정에 공헌한 경우 의견제출자에 게 포상
제27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o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

이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을 제정하여 조례의 작성과 평가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서 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규정 중에서 입법평가와 관련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조 문	주 요 내 용
제3조 (사접협의)	 아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 행정규제 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아관계 부서 등 실·본부·국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함

제2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조 문	주 요 내 용
제4조(평가)	 아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심사기준표 중 "II.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III. 자치 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의 심사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의 입법안 평가에 적용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 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 중 해당되는 심사항목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음 평가결과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함 아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 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한 심사기준표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 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6조 (입법안 작성)	 아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 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이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입법이유 주요내용 입법내용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관계법령 발췌 내용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심사)	 o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심사를 의 뢰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 1부

조 문	주 요 내 용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업무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심사기 준표를 토대로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음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8조 (심사방법)	 이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입법안 을 주관부서에 통보 이 법무담당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입안하고 심사에 통과되기 위해 서는 행정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자료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 가, 갈등영향평가 등의 각종 영향평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실시하 고 있다. 조례로는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 다. 또한 조례의 입안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한 비용추계자료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제2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서 서울특별 시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현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34조 에 규정되어 있다.3) 동 조례 제1항은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 할 때, 사전에 성별영향 분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사도 받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이란 동조례 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 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 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하려고 할 때에 시민생활에 중대할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4)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 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 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³⁾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 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6 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 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의 자치입법조례의 규정들은 다시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 강동 구, 서대문구,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광진구, 성 동구, 중구, 도봉구, 중랑구, 동작구, 종로구, 송파구, 은평구, 금천구, 강남구, 구로구 등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입안절차

① 입법계획의 수립

주민들에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이유, 입법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계획수립단계가 입법단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개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의 발생 에 따라 입법수요 및 입법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입법 의 내용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입법단계가 시작되기도 한다. 서울 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5조는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 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 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 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서울특 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항)에는 자치법규를 정 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계획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주관하는 관련부서에서 법무 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입법적합성 내지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게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법정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내부적으로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회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예산수반 등 재정부담이 있는 경우 에는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물가대책위원회 등 내부협의절차를 거 치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 및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당해 연도에 제 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 례 제10조 제1항).

② 입법예고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관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 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보통 20일 이상이 원칙이며, 시보 내지 인터넷에 공 고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 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7조).

예외적으로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 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 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입법계 획에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례 제4조 내지 제10조).

③ 입법안의 작성

입법안은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항목들을 검사하여 작성한다(같은 조례 제11조). 또한 입법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입법 이유·주요내용, 입법사항(제명·본칙·부칙), 관계법규, 예산조치 사

26

항,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결과, 신·구 조문 대비표 (일부개정의 경우),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이다.

④ 법제심사

법제심사는 먼저 주무부서장(과장·담당관)의 전결로 조례·규칙심 의회가 개최되기 14일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입법안이 입법예고 및 시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심의회 14일 전까지 법제심사의뢰가 불가능할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법제심사 실시할 수 있다. 심사부서는 이 때 입법안,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달한 표준안 또는 입법 권고·개선 사항 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본, 규제심사 결과 자료, 입법안의 취지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법제심사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사항의 법적합성·타당성·실효성, 규정의 논리성·명확성·평이성 등이 심사기준이 된다.

다음의 경우에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 려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8조).

-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주관부 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사안에 따라 입법안을 수정하여 입법안을 확정 한다.

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조례·규칙 심의 회가 구성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심의회는 시장이 의 장이 되며, 부시장 3인, 본청 1급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보화기 획단장·감사관·대변인을 포함한 본청 국·본부장, 건설안전본부장 및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첫째 주 제외) 수요일 개최되는 실·국 장 간담회 직후에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주로 시장이 시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된 조례 안(조례공포안, 이 경우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된 조례공 포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기타 시의회에 제 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심의절차는 주관부서장(과장·담당관)의 전결로 안건을 첨부하여 조 례·규칙심의회 개최 5일전(금요일)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면, 상 정권자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소관 관할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한다. 조례심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첫째 주 제외) 수요일 개최되는 실·국장 간담회 직후에 개최(최소안건 3건 이상), 심의 결과는 법무담당관이 각 안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조 례안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기 획담당관은 시의회에 개회 10일전까지 조례안을 일괄 송부(「서울특별 시의회의 규칙」제18조)하는 것으로 시에서의 조례입안절차를 마무리 한다.

28

⑥ 서울시의회에서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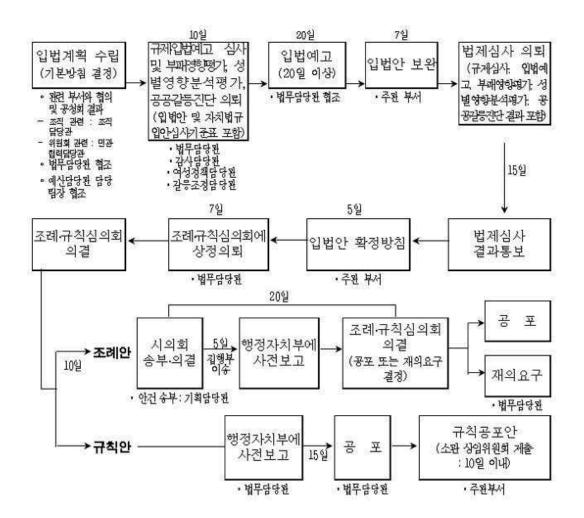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시 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회 의규칙 제18조 제3항). 회부된 의안은 의장이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전 송하고 인쇄하여 배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 부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 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 제19조 제1항).

의장이 의안을 의원들에게 배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홈페 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동 규 칙 제192조의 2에 따라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 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 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일반적인 심사기 간과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위규범인 지방자 치법 제63조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재정의원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동 법 제64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정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장이 회의의 소 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조례나 규칙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그림1> 자치법규 입법절차5)



제 2 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제정경과

사전 및 사후 내지 병행평가를 갖춘 완비된 형태의 입법평가제도는 아니지만 서울특별시는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입안과 심의를 위한 심사

⁵⁾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법무행정정보 중 자치법규입안절차의 내용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knowledge.html?pAct=lawinfo_view&pNo=3&pTree OpenId=lawinfo_list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2002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1989년에 이 미 서울특별시는 '법제이론과 실무'를 발간하였다고 하며, 이후 2000년 에는 '자치법규입안실무집' 및 85개 항에 이르는 '자치법규정비 관련 첵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심사기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6)

서울특별시는 2002년에 「서울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 정하고 그 별표로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를 제정하였다. 이 당시 이 조례를 입안하는데 참여하였던 전기성 교수에 따르면 본래 이 기 준은 1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시의 회에 관련된 사항과 예비항목이 삭제되어서 심사항목은 4개 대기능, 20개 소기능, 111개의 항목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7)

이 당시에 참조했던 외국입법례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고(故) 박영도 박사가 소개한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입법심사기준이었 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연방법무부가 '필요성심사', '합헌성심사', 그 리고 '통일성심사'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법형식성검사(Prüfung der Rechtsförmlichkeit)와⁸⁾ 독일일반직무법(GGO Ⅱ) 제22a조에 규 정된 이른바 '푸른 심사항목'(Blue Prüffragen)의 10개 심사항목 등이 입법심사기준을 만드는데 참조되었다.9)

또한 스위스의 1976년 입법기술지침(Richtlinien der Gesetzestechnik 1976)과 이를 수정한 1986년의 입법기술지침(Gesetzestechnik Richtlinien: GTR 1996)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1979년과 이를 보완한 1991년의 입 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n 1990) 등이 중요한 입법례로서 입안 심시기준을 작성하는데 참조되었다고 한다.¹⁰)

- 7) 위의 논문, 84면, 각주 6)의 내용
- 8) 위의 논문, 89면.
- 9) 위의 논문, 90면.
- 10) 위의 논문 91면.

⁶⁾ 전기성, 입법심사기준표의 제정과 발전을 위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2권, 한국입법 학회, 2002., 83면.

2. 내 용

자치법규조례 제11조는 입법안 작성을 위해서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을 보면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대상 조례에 대한 구별이나 제한은 없는 상태에 있다. 즉, 위임조례나 자치조례 모두 입안심사기준표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 다. 그렇지만 입안심사기준표의 작성주체가 서울시 의회가 아니라 서 울시라는 점에서 주로 자치조례보다는 위임조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법규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의 필요성, 자 치법규의 정당성확보,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관리를 대분류로 하여 111가지 항목의 다양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I 자치법규	1. 입법수요 동향조사	
입법의	가. 입법수요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상위법령 제・개정,	
필요성	시민여론, 자체 필요 등)	
	나. 입법요구(의사)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집되는가	
	다. 어떻게 수집하는가	
	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마.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	
	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훈령·지침 또는	
	지시 등에 의하였는가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근거는 무엇이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표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제 2 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라. 시민은 종래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마.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3. 입법의 필요성 조사	
	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라. 지방의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한 입법인가	
	마. 시민단체등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 또는 다른 입법 요구에 의한 것인가	
	4.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긴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다.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라. 계획된 기일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1. 헌법규정의 적합성	
	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다.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제 2 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통일성 및 조화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과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마.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아. 여러 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자. 자치법규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필요성은 없는가	
	4.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제 2 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였는가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바.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아.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자. 자치법규 내부의 체계유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 자치법규 이외에 예규 등 내부규칙을 자치법규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검토되었는가	
	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치구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파.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하.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거. 준용을 엄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의 법규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국접아기다 나는 눈제점이 있음에도 중군만 김돖이 준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더. 위원외의 실시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러. 과태료 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더. 파데쇼 등 시인의 번역을 세안하거나 심해하는 경구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제 2 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상위 법령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여차은 바고 이느기를 피아치여느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가 라.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6. 경제성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라.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7. 시민과의 친숙도	
	가. 새로운 규율은 시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나.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는가	
	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마. 시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가	
	바. 행정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는가	
	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반영하였는가	
	아.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8. 실효성	
	가.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나. 행정권한의 주체와 사무진행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제 2 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다.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Ⅲ 자치법규	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 내부적으로 입법심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심의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기록을 첨부하였는가	
	라.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가, 사전검토 의뢰시 충분한 기간, 자료, 의뢰자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가	
	2. 관계기관간의 협의	
	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그 협의를 거쳤는가	
	나. 서울시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는 거쳤는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라. 기타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3. 관련위원회의 심의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또는 자문인가를 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심의 자료를 첨부하고 있는가	
	다.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가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4. 공청회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제 2 장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관련규정 및 현황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가	
	다.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라.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5.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아니면 생략하였는가, 생략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리하거나 찬성한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6.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론과 시민의 압력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라.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Ⅳ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제 2 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심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 정되어 있다. 입안심사기준표의 입법의 필요성 항목에서는 입법효과의 사전예측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즉, 입법효과에 관 해서 다음의 항목들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별표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I 자치법규입법의 필요성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항목).

-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 되어 있는가
-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 되었는가
-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은 일부이긴 하나 사전입법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항목들은 위의 설문들이 검토되었는지에 관 한 확인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더 구체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입안심사기준표는 사후입법평가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즉, 자치법규조례의 제25조에서는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별표1의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의 사 후관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하여 1년 이후의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입 안심사기준표는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별표1 서울 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 준표 IV 사후관리 1. 사후관리의 기준).

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

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조례에 이러한 입안심사기준의 다양한 항목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입안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자치법규조례는 이러한 사전입법평가나 사후입법평가와 관련된 내 용과 함께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25 조 제2항은 시장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 로 점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시 제1호부터 제4호로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제 2 절 서울특별시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항

-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 래하게 하는 경우
-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경기도나 부산과 같은 조례에 관한 사후입 법평가를 위한 특별 조례는 없다. 다만, 서울은 조례가 제정된 1년 후 에 다시 입안심사기준표를 중심으로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 항). 다만, 이러한 사후입법평가심사에 대한 기록이나 공개가 없다는 점에서 사후입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3. 특 징

서울특별시의 입안심사기준표는 경기도나 부산 및 광주와 같이 제 도화된 입법평가제도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한 수준 의 입법심사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입안심사기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안심사기준표의 사용은 조례안의 입안작성시와 심사시 모두 에 적용된다. 그리고 제정 이후 일년 후에 적용되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사후관리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사후 평가에 대한 조례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둘째,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이 평가지표의 사용은 서울특별 시의회에서의 심사단계에서는 생략되고 있으며, 주로 서울시 내부에 서 관련부서와 법무담당관 사이에서 조례안을 작성할 때와 심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입안심사기준표는 나온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아닌 체크리스트로서 해당사항에 대한 가부여부만을 묻고 있다. 따라서 기 준표 이외에 종합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심사기준표의 제도적 원형은 조례가 아니라 독일계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심사기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넷째, 그 운용의 측면에서 현재 서울특별시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실 제로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보고서나 통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입안심사기준표는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적어도 공개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1 절 서울특별시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기준

제 3 장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

제 1 절 서울특별시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기준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중에서 일부에 관한 입법평가를 실시 하였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비교적 최근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였다. 평가대상 조례는 자치 조례와 위임조례 모두 추천을 받았다.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관련 되 는 법률과의 충돌여부에 관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추천을 받았으 며,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위임규정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조례를 추 천받았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추천 받았지만 사후평가의 대상이 아닌 제정된지 1년이 안된 조례라는 점 에서 대다수 조례에서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른 지역 보고서와의 구성적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4장에 사 후평가서를 첨부하였다.

평가대상 조례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평가대상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의 조례입안기준에는 시행 후 1년이 되면 사후평가를 실 시하기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시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후평가라 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사후평가를 위한 심사항목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가 스스로 하는 내부평가관리라는 점에서 평가대상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구 및 예산에 대한 고려가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의 구체적인 목적달성도나 효과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 항 목들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평가 이외에도 학계나 언론, 일반시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견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중 사후관리

IV.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제2절 서울특별시 개별조례 입법평가

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제 2 절 서울특별시 개별조례 입법평가

1.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본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 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을 마 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

동법과 시행령에서는 조례에 직접 위임한 사항은 없지만 제3조 제2 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가 되는 특정한 상위법이 있다는 점에서 위임조 례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특정한 위임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자치조례로 분류하여 추천한 조례이다.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기술이전 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2) 조례의 주요 내용

동 조례는 지역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과 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 으며, 제4조는 시장이 '기술이전·사업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시장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 제6조는 기술이전·사업화 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 으며, 제7조는 사무의 위탁, 제8조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9조는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제10조는 지역협의체 의 구성, 제11조는 기술거래행위의 촉진, 제12조는 공공연구개발 성과 의 귀속, 제13조는 재식재산권 등의 실시료 면제, 제14조는 시행규칙 을 규정하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상위법령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4.11.9. 타법개정사항이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14.12.9. 역시 타법개정사 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최근의 개정내역이었다. 본 조례는 2015.4.2. 제정되었으며, 바로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서울시는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였지만,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조례상의 근거를 두게 되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입법체계가 맞지 않는 규정은 없다.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라는 성격상의 이유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또한 없다. 본 조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 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 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 례 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법령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 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또한 본 조례에 규정된 법령 용어는 상위법령과 함께 아울러 검토 할 때 명확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없다.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차원에서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규정은 없다.

(4) 사후 평가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후평가관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 해서는 아직 시행된지 채 1년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기준항 목들은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이전·사업화센 터(제6조)와 지역협의체(제10조)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찾 을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 바 있다는 점에서 조례에 규정된 기술이전·사업화 센터등과의 역할분담에 관해서 향후 사후 평가가 필요한 조례라 할 수 있다.

4) 종합 의견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례내용은 규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바는 없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 용어가 불명확하게 사용된 내용도 없다.

다만, 조례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및 사업 화는 조례 제정이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조 례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 다는 점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진행 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이전 등의 촉진계획 및 3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연계성을 갖도록 서울특별시의 시행계획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시행계획의 작성주기 및 시행계획 작성일을 법정화하여 보다 계획 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1) 조례의 목적

본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제6조에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의 확대뿐만 아니라, 능력,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주거 안전 및 주거 수준 향상, 부채 경감, 생활안정, 청년 문화 의 활성화 등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을 포괄하여 계 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는 청 년정책연구 등, 제9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제10조는 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는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는 청년의 고용확대, 제13조 는 청년의 주거안정, 제14조는 청년의 부채경감 등, 제15조는 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7조는 청년의 권리보 호 등, 제18조는 청년허브의 설치 · 운영, 그리고 제19조에서는 청년시설 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조례 평가

(1)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은 그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고 있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본 조 례의 직접적인 상위법은 아니다. 청년의 고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가 있으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기본적으로 지방자 치단체도 청년 등의 복지사업에 고유성을 갖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본 조례는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동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 이외의 사항 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취업 이외에 규정된 주거나 부채경감, 생활 안정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에서 특별히 관련 법률과 충돌 되는 규정은 없다.

현재 조례의 내용은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 로 일종의 정책 거버넌스 기능을 제도화한 조례이다.

실제적인 규정은 다른 개별 조례에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서울특별 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청년과 관련된 조례 이외에도 주거나 복지와 관 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례와의 구체적인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청년에 관한 특별한 입법적 수요나 요청을 이 조례를 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청년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입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규정한 조례의 내용은 없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본 조례에 규정된 법령 용어는 상위법령과 함께 아울러 검토해 본 결과, 명확성과 통일성에 특이사항은 없다. 또한 표현의 명료성 및 편 의성 차원에서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규정은 없다.

(4) 사후 평가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후평가관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 해서는 아직 시행된지 채 1년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기준항 목들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후평가가 필요한 조례이다.

조례가 규정한 청년정책위원회(제9조)와 청년허브는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4) 종합 의견

본 조례는 청년에 대한 기본조례라는 명칭에 따라 고용 이외에 주 거안정 등 청년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조례와 함께 역할을 담당하 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1) 조례의 목적

본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 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제3조는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5조는 시설의 확보 등, 제6 조는 청소년거리 조성, 제7조는 청소년활동의 날, 제8조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청소년활동' 내지 '청소년활동시설' 등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전제로 한 의미를 지닌다. 상위법령에서 직접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청소년 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항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점에서 자치조례라 할 수 있다.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준수하면서 제정 되었고 이에 대한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조례의 내용은 이러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을 준수하면서 형성된 것이고 법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본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 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바, 그 취지와 규정하는 내용에 비추어 법령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본 조례에 규정된 법령 용어는 상위법령과 함께 아울러 검토할 때 명확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차원에서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규정은 없다.

(4) 사후 평가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후평가관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 해서는 아직 시행된지 채 1년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청소년활동조례에 관한 언론 및 학계, 시민들 의 특별한 의견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 조 례입안심사기준상의 사후관리 기준항목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제4조)¹¹⁾는 한국청소년연맹에 운영위탁 되어 이 미 운영 중에 있다.

4) 종합 의견

본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 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데,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결 과 보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제반 규정은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사항은 대체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와 비교하면 청소년수련활동 의 인증제도 및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의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2014년 11월 19일에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 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 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 말하는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¹¹⁾ 홈페이지는 http://www.sy0404.or.kr/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법령상의 지방분권의 취지를 이어받아서 제정된 것이 서울 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조례의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 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에 있다(제7조).

따라서,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자치사무"가 아닌 "국 가사무"로 본다면,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근거 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 조례는 자치조례의 성격을 지닌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 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서울특별시의 지방분권을 촉 진하거나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6조이다. 즉,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1항에서 "시장은 시 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운동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반면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서 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다소 충돌될 여지를 둘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뜻에 시민단체의 참여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시민단체의 참여는 주민 의 참여보다 다소 좁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내용상의 차이를 갖 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권에 관한 다른 조례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의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또한 동 조례의 내용상 법령위임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는 규정은 없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동 조례의 내용상 언급된 내용 이외에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 성 등에 문제가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차원에서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규정은 없다.

(4) 사후 평가

2015년 4월 2일에 시행되어서 본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관리는 아직 없다. 사후평가관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된지 채 1년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기준항목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는 지방분권 촉진·지원추진계획(제4조)이라 할 수 있는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 방분권협의회(제7조)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없다.

4) 종합 의견

이 조례 제6조에서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주축 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9조에서는 시민단체 에서도 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라는 개 넘이 사실상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6조의 시민의 참여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만 조례에 명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주민 및 시민의 개인적인 참여가 중요 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동 조례상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분권협의회 는 현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조례 의 집행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5.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의 발전과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제3조는 기본방향과 제4조는 책무, 제5조는 사회공헌활동 지원계획, 제6조는 지원, 그리고 제7조는 포상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

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기타 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조례이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자치조례이 다. 특별한 상위법은 없으며 「교육기본법」이나「고등교육법」 등에서도 본 조례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없다는 점에서 상위법령 위반은 없다. 사회공헌을 대학교의 목적 및 직접적인 역할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구별하여 사회공헌활 동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대학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보다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 다. 또한 조례상의 체계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시립대학교 운영조례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두 조례 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본 조례에는 법령에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립대학교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및 시민에 대 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주민의 권리제한과는 관련이 없는 사 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언급한 내용 이외에 법령용어의 명확성이나 통일성에 어긋나는 규 정은 없다.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차원에서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규정은 없다.

(4) 사후 평가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후평가관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 서는 아직 시행된지 채 1년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조례에 관한 언론 및 학계, 시민들의 특별한 의견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서울 특별시의 조례입안기준상의 사후관리 기준항목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4) 종합 의견

다른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취 지를 갖고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시민들의 도서관이용, 시민교양강좌 개설, 학교 시설 이용 등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 겠지만, 사회공헌활동의 주체는 시립대학교라는 점에서 지원조례에 직 접규정하지 않고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 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제2조 용어의 정리,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 지원의 범위,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 9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 위원장, 제14조 회의, 제15조 의견청취 등, 제16조 위원의 수당, 제17조 시책사업 추진, 제18조 외 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 치·운영 등,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 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2조 세계인의 날, 제23조 표창, 제24조 외국 인주민의 정책참여,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6조 시행규칙 등의 규정 을 담고 있다.

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재외외국인 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본 조례는 자치조례이다. 조례의 규정은 위의 법률들에 위반되는 규정은 없다.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 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 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한다. 본 조례는 외국인주민 조례와 다문 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한 조례이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외국계 주민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위에서 의 정책집행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모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합조례 는 체계상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다만, 다른 조례와는 체계적으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주로 여성문제 내지 복지문제와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나 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와 본 조례의 내용상 연계 성에 대해서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본 조례의 내용상 법령에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 정은 없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① 외국인 주민

본 조례의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외국인 및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 은 외국계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외국인 주민으로 봄으로 써 국적인과 외국인을 혼동하고 있다.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의 개념 을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적상 한국인인데 이를 외국인 주민으로 규정하 는 것은 논리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공통정책의 대상으로서 규정한 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국계 주민' 등으로 따로 개념정 의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을 방지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② 다문화 '가족'의 범위

본 조례는 '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다문화가 족 관련 법제 내에서는 특정한 판단기준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법률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지만 외국계 주민에 대한 지 원정책으로서 자치사무로 보아 법률혼을 한 다문화가족과 사실상의 차 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혼에 근거한 다문화가족까지 포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에 관한 정의 규정 차용 여부에 따라서 가족자체의 정의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기 본법이라 함)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기본법 제3조 제1호)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정의개념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보면 '사실혼' 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으 로 '이루어진' 가족을 제외하고 법률혼으로 한정할 경우, 국민과 외국 인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도 다 문화가족에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지원법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도 준용한다.

이러한 점이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사후 평가

외국인 조례와 다문화 조례의 통합이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 사후평가대상이 아니다. 조례에 대한 언론 및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향후에 사후평가가 필요한 조례 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서 통합의 효과 및 통합이후의 지원사항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는 2014년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를 구성한 바 있다.¹²⁾

¹²⁾ 자세한 위원명단은 다음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ategory/12074

4) 종합 평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외국인 및 다문화 조례를 분리하여 규정 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이를 통합하여 규 정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를 2015년 하반기에 개최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회의가 정기화된다면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집행과 지원사업을 위해 서는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한 하나의 조례로 규정 할 수 있지만, 개념 등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 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본 조례 제3조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제4조 지원 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제5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6조 기 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제8조 사회주택 활성화 를 위한 도시계획 등 수립, 제9조 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제10조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11조 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제12조 관계 법령의 준용, 제13조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 용, 제14조 사회주택으로 활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제 15조 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16조 사회주택위원회, 제24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택에 관한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과 위원 회 그리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주거복지의 문제는 서울특별시의 고유문제라는 점에서 본 조례는 자치조례의 성격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 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 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제1조),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의미하므로, 이 역 시 임대주택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 「임대주택법」을 상위법령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사 회적기업 육성법」 등은 관련된 법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조례가 2015. 1. 2. 제정된 이후,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는 동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이는 최근의 개 정된 사항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내용 중 조례와 직 접 연관되는 부분은 없다.

해당 조례는 기존 주택법,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주택'이나 '임대사 업자' 개념과는 다른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과 제정 목 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었는지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 실제 내용적으로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조례는 "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제4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제5조)을 규정하여 지원시 적정한 사회적 편익이 나와야 하고, 사업 종료·중 단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반면, 주택법 제3조 제4호는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 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 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할 여지가 남아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의 주거복지 기본조례와는 구별된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여부

공동사업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서울특별시와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권리 제한 규정은 없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으로 이 역시 임대주택의 일종이 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이 때 사회주 택과 임대주택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즉 사회주택에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개념이 공히 들어가는지 등 명확성과 통일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는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조례 제2조 제2호 가목)인 자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는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의 미하는 한다. 또한 (2)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조례 제2조 제2호 나목)도 포함하는데, 이 조항 나목은 '임 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서울특별시·SH공사 또 는 L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국 민임대주택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및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동 규칙 제32조 제3항 에 따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H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 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 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를 최소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상 "사회경제적 약자"는 조례 제2조 제2호 가목(「사회적기 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을 따를 경우 '월평균소득 하위 60%'가 기준이 되는 반면,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국가·서울특별시·SH공사 또는 LH공사가 소 유한 임대주택 거주자)에 따를 경우, '월평균소득 하위 70%', '월평균 소득 이하',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 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며, 상위 법 률과의 통일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계획과 조례가 상이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임대청약에서 탈락하거나 청약 자체를 하지 못한 사 람이 소송 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4) 사후 평가

조례의 제정이 올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평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언론 및 학계에서의 반응 또한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 사 회주택위원회(제16조)와 제24조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준비중인 단계로 보인다.

4) 종합 의견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사회적 편익의 원칙,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임대주택 관련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주택법 제1조)으로 하는 것 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그 시행이 필요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다. 사회적 편익의 원칙,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은 이러한 사업의 성격 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8.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의 안전감사 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조례의 주요 내용

- 가.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안전감사
 의 수행, 감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 및 검
 토를 담당함(안 제2조)
- 나. 정원은 20명이며,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구성하고(안 제3조), 안 전감사반의 운영에 참여함(안 제7조)

전국에 옴부즈만 관련 자치법규는 총 47개¹³)가 존재하지만, "안전감 사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특별한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여 상위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소관부처: 국토교통부)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만약 위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감사'와 시설

¹³⁾ 법제처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물안전법의 '안전점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라면 위 법률과 충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례상 '안전감사'가 무슨 의미인지,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양 규정에 대한 비교에 한계가 있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여부

위 조례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안전감사계획 수립 에 관한 자문,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등"으 로 규정하여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목적 조문(제1조)에서도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으로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울특별시 내의 모 든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위 조례가 일반 주민들의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도 적용된다면 해당 주민의 헌법상 재산권 침해(제23조), 사생활 침해(제17조), 동법 제37조 제2항 위배 등이 문제될 수 있다.¹⁴⁾ 그리고 위 조례가 서울시 가 소유하는 시설물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마찰이나 문제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⁵⁾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① 안전감사 옴부즈만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¹⁴⁾ 특별한 법률의 위임이나 해당 주민의 동의없이 조례의 규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안전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함

¹⁵⁾ 같은 취지에서 목적조문의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의 표현도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서울특별시 개별조례 입법평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감사의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 에서 문제를 갖는다.

다만 제1조(목적)에서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 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이라고 규정하여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지역의 조례에서의 정의 규정16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 조(정의)

 "옴부즈만"이란 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 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도에 설치한 경기도고 충처리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이란 여론수렴과 의견제출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명확한 설명 을 위해 정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감사 옴부즈만이란 건설공사 및 도 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자문 및 수행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옴부즈만(옴부즈맨)"은 원래 "공공기관(행정기관, 검찰, 법원 등)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16) &}quot;정의규정"이 없는 조례도 있음(「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대구광역 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규정이 있으나 "옴부즈만"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음)」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 다.17)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가 각 국에 보급되면서 자각적인 정책에 기해서 또는 실제의 필요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행정기관이 옴부즈만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행정활동의 당부를 조사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행정형 옴부즈만'이라 한다.18) 그리고 이것은 정식의 행정구제제도로서 잡히지 않는 일상의 작은 민원 또는 정식의 행정쟁송제도로서 해결되기 어려운 불평·불만 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19)

제2조의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국민의 고충처리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구제와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단지 시민이 그 조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고충처리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옴부즈만'이란 표현 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른 조례에서의 '옴부즈만'20) 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 조(정의)

 "옴부즈만"이란 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 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도에 설치한 경기도 고충처리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8) 위의 책(김남진, 김연태), p910.

20) 법률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¹⁷⁾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4, p534;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4, p909

¹⁹⁾ 위의 책(김남진, 김연태), p911.

제2절 서울특별시 개별조례 입법평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 조(정의)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 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제 2 조(기능)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2.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3. 시민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4. 불합리한 법령 · 제도의 개선건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이상의 구민과 인근 지역의 대학교수 중에서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 정 및 구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에 대한 설명과 다른 조례에서 이용되는 "옴부 즈만"의 의미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옴부즈만"과 상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대체용어가 있다면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²¹)

②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과 관련하여 상 위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상위법령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여 기서는 "시설물"의 용어정의에 대한 모델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용어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 면 "정의 규정"을 두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6>「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
 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 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물을 말한다.

법령체계상 위의 상위법과 함께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법령 과 조례에서 중요한 내용은 조례만으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 민인 수범자 입장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위 법령을 참조하여 서 울특별시에서 안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③ 임기 및 신분보장

본 조례는 연임 및 신분보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연임에 관 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동일한 시민이 계속적으로 옴부즈만이 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본 조례에서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둘 필 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른 조례에서는 '옴부즈만'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다. 본 조례는 해촉(제5조)에 대해 서만 규정하고 있고 신분보장에 관한 조문은 없다. 다른 지역 조례의

옴부즈만 규정에 비춰 신분보장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해 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 5 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하 생략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구성)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조례의 "안전감사"도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 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옴부즈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신분보장을 규정해야 하고, 옴부즈만의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④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의 검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음을 제1항에, 안전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자문가를 포함하여 안전감사 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음을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하나의 항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²²⁾ 그리고 동 조문에서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안전감사와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음은 직무규정(제2 조)에 서술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가안

제 2 조(직무)

4.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 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철거 친선에 원하여 표정하는 사건

⑤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 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전감사 옴부즈만 외에) 시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 안전감사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⑥ 비밀유지 준수의무

음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 준 수의무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²²⁾ 본 조문에서 "안전감사반"과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별도로 "안전감사반"을 둘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안전감사 옴부즈만" 내에 "안전감사반"을 둘 수 있다는 내 용이거나, 위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하에서 서술하는 필자의 제안 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제2절 서울특별시 개별조례 입법평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감사 옴부즈만"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하는 경우 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4) 사후 평가

조례의 제정이 올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평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언론 및 학계에서의 반응 또한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3년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 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에 대한 옴부즈만 을 위촉하고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²³⁾

4) 종합 의견

이상의 검토의견이외에도 본 조례는 제2조(직무), 제3조(정원), 제4 조(위촉), 제5조(해촉)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과 조 례를 비교해보면 단체를 먼저 구성하거나 설치하고 업무가 규정되는

^{23) 2013. 1. 7.} 서울시, 7개 분야 전문가 「시민참여옴부즈만」 첫 출범, 보도자료

형태로 되어 있다. 이를 다른 법률처럼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서의 조문체계는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레이가 친구기기기이이지
제 8 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13조(업무)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 2 조(구성)
제 3 조(심의사항)
제 4 조(분과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장 시민감사옴부즈만
 제 3 조(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 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및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 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 3.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 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 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 4 조(직무의 독립성)
제 5 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 6 조(직무 및 권한)
제 3 장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제12군(운영위원회 운영)

따라서 내용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에 관한 규정이 조직의 설치규정 전에 규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서울특별 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제2조에서 표제는 "안전감사 옴부즈만 설치 등"으로, 내용에는 현재 정원(제3조)과 위촉(제4조)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제3조는 직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운영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 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 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2) 조례의 주요내용

가. 시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2조)
나. 시장과 자치구청장, 시민의 권리·책무를 규정함(안 제3~4조)

- 다.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을 정하고 운휴일, 운 영시간, 참여신청, 참여혜택 등을 정함(안 제5~9조)
- 라.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행실태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10~11조)
- 마.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운휴일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
 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안 제12조)
- 바. 승용차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승용차마일리지를 도 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참고로 전국에 승용차요일제 관련 자치법규는 총 13개²⁴)가 존재하 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의 위임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① 제1조

위 조례의 제1조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 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대기환경 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등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의2의 규정이 보다 직접 적인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 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²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 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 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 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 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다른 조례의 규정을 보면 위임법령의 근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4조의2에 따라 거제시 승 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 교통수요관리 시책인 승용차부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율 적 참여를 통한 승용차부제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확한 위임규정 제시를 위해 목적조항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3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 적 참여를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의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의 범위

위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 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한다. 다만, 승용차마일리지제와 관련해서는 렌터카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서는 장애인 자동 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를 제외 하고 있다. 적용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제 3 조(적용대상)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긴급 자동 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즉, 승용차요일제 관련 다른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을 "비영업용 10인 승 이하 승용차"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가 강제 적 가입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적용되는 것 이므로, 장애인 자동차, 긴급 자동차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굳이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적용시간

정하고 있다. 적용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유사조례인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대전광 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는 적용시간 관련 조문이 없다. 이와 비 교해 보면 운영시간을 제한한 본 조례가 시민들의 의무를 감소시키면 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천 및 울 산의 조례에 비해 오후 시간을 10시까지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될 수 있고,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은 각 자치시의 교통량, 교통의 흐름, 러시아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지만, 서울특별시에서의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서 운영시간을 단 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④ 승용차요일제 해제사유(위반 횟수 관련)

본 조례는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참여혜택 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조례20에서는 5회 이상 위반할 경우 승용차요일제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중단 혹은 해제사유로서 3회가 적정한 것인지 검 토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 승용차요일제로 추구하는 목적, 제공하는 혜택 등이 서로 다르므로, 본 조례에서 해제사유를 "3회 위반"으로 규정한 것이 반드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승용차요일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에게 유인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혜택 등도 중요하지만 그 중단 및 해제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반횟수를 현행보다 증가시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제도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27)

²⁶⁾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5조 제4항 제1호),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제6조 제2항 제1호),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제6조 제2항 제1호)
27)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해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규범적 분석이 필요함과 동시에 교통의 원 활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 여 대상 및 요건 등을 다시 정하는 주기적인 규정검토조항이 필요 하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여부

위 조례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 는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본 조례는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4) 사후 평가

조례의 제정이 올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평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언론 및 학계에서의 반응 또한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종합 평가

다른 지역과 서울은 다른 교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 울지역 조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용대상과 적용시점 그리고 해제사유 등에 대 한 상시적인 정책적 평가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조례개정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1) 조례의 목적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 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2) 조례의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조례에서는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 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제3조),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 한 사항을 규정(제4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제5항), 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7조), 대중교통 안전 및 대중교통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제9조),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대중교통활동 촉진과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 11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제12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제13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14조), 대중교통전용지 구의 지정(제15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등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제16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령 위반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본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 교통법」으로 표현함)」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 사정에 맞게

일부 수정 및 일부 조문을 신설하여 제 · 개정되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는 「대중교통법」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모두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본 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이 있는 위임조례는 아니지만 상위법으로서 대중교통법 사항들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법」 제7조에 의하면 시장에게 5년 단위의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1항), 이를 수립할 때에는 「국가통 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며(제2항),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특별시장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 항). 이에 비해 본 조례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법」 제7조에 따라 시민 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조례 제7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의 대중교통계 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 중교통법」 제8조와「대중교통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1항), 시장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함(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안에서 교통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계획안 제출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 또한 연차별시행계획의 기간제한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상위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무에 대한 기본사 항을 제정한 것으로, 각 사무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는 않음. 즉 포괄적인 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 및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시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조례 에서도 이를 서술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본조 례임을 이유로 그 제한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그 제 한내용을 모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대중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 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 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장 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법」 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시·도지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재량사항을 조례에서 기속사항으로 규정 하는 것이 그 의미상으로는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헌 의 근거로만 본다면 오히려 법률에서 의무규정화 하지 않은 부분을 조 례에서 의무규정화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국민 이나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상의 권한규정 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례입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례 제17조 제1항의 "평가해야 한다"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주기로 정하여 '2년마다 평가를 실시 한다'는 형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법 시행령」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에서는 시장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본 조례에서도 시장이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서비 스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대중 교통운영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본 조례는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4) 사후 평가

조례의 제정이 올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평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언론 및 학계에서의 반응 또한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종합 의견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대중 교통법」의 내용 중 시·도지사의 의무나 권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 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의 내용도 조례 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법 제11조는 노선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1.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 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조례이다 (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되어 위임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제4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제5조 국공립어린이집확 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제6조 위원회의 기능·운영, 제7조 위원의 의 무 등,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 수당, 제10조 국공립어린 이집의 설치, 제11조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 공 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3조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 의 설치, 제1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제15조 유휴지 및 유휴시 설 활용, 제16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 설치비용의 보조,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규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제 5 조 제 3 한 제 3 호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규정함

지방의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의장을 포함)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등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을 추천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배분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⁸⁾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서 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개정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동 조례의 내용상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이며, 조례 의 내용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용어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칭상 국가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국립어린이집이고, 지방자치단 체인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더라도 조례 에서는 국립어린이집은 배제하고 '공립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

(4) 사후 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의 대상 이 되지만 서울특별시 자체의 사후평가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는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²⁸⁾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51면.

동 조례상의 위원회인 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의 활동은 활발한 편 이며 회의 개최 내용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29) 위임조례로서 위 조례가 갖는 내용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위임 내용을 포함하여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등의 규정이 포함 되어 설치 지원만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4) 종합 평가

위의 조례는 위임조례로서 몇 몇 조항에서 법령상의 위임범위를 벗 어나 있는 바, 이러한 조항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1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동 조례는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5개의 조 문으로 되어 있다. 이 조례는 제2조에서 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제3조 는 소요비용의 산정, 제4조는 소요비용의 부과 징수, 제5조는 대행법 인의 업무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²⁹⁾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5544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규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제 5 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 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 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7조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 른 대행법인의 지정권자는 시장(구청장에게 위임)이므로, 조례로 그 지정요건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동 조례 제5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를 해석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는데, 상위법 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고, 조례로 정할 경우 각 자치단체별 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조례의 해당 내용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동 조례상 법령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동 조례상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

(4) 사후 평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후관리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다. 또한 위 조례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기타 언론, 학계 등에

서 논의되는 특별한 논의도 없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와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없다.

4) 종합 평가

위의 조례는 위임조례로서 몇몇 조항에서 법령상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는 바, 이러한 조항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 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조례 제1조).

2) 조례의 주요 내용

도로법 시행령에 위임에 따라서 동 조례의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 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 다. 제4조는 점용료 등의 부과와 징수, 제5조는 점용료 등의 분할납 부, 제6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9 조 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의2 과태료 부과·징수, 제 10조 준용규정,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제12조 세입 및 징수교부금, 제13조 시행규칙 등 주로 점용료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위임받아 서 규정하고 있다.

3) 조례의 평가

(1) 상위법규 위반 여부 및 입법체계의 정밀성

① 제5조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 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 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 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u>다</u> 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u>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 5 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점용기 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 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 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 록 규정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단서에서는 연간 점용료 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 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외에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 배된다. 만약 법령과 함께 조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위의 조례 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 지만, 조례의 문언만으로는 그러한 해석결과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도 출할 수 없다. 따라서 불명확한 해석과 위법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 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제8조

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 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 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 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는「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 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고,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제징수법」 제 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 록 규정함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9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제2항),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 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상위법령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독촉과 최고를 준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도로법」 제69조 제1항에서 납부기간 을 정하여 독촉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법 제69조 제1항 은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준용규정이 법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은 위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위법령에서는 최고서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 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u> 를 가산 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 야 하다.	제 9 조 제 3 항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 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82 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함

③ 제9조 제3항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7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 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그 이자를 「국유재 산법 시행령」 제73조(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에 따른 이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달리 그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법령상의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여부

제10조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 • 징=	수 등에	관해서는	0]	조례에	규정
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	수의 예에	따르도	록 규정함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상위법령인「도로법」에 규정된 내 용 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도로법」 제66조 제4항에서 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8항에서는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 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시 행령이 규정된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은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3)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

동 조례상 법령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위배하는 내용은 없다.

(4) 사후평가

위의 위법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 사후관리기준 중에서 위의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다. 위임사항들

에 관해서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기구 및 인원, 예산 등의 사항에 대 한 항목은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물론이며 본 조례에 대한 언론이 나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특별한 의견이나 평가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종합 의견

위의 조례는 위임조례로서 몇몇 조항에서 법령상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는 바, 이러한 조항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제 1 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이 과제는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입법평가 조례를 분석하고 개별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서울특별시에는 입법평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 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규범적 평가를 하였다.

분석 대상 조례가 최근에 제정된 조례라는 점에서 사후관리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2015년도 초반에 제정된 조례에 대한 이 행상황에 관하여 위원회 등의 조직과 활동 등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에는 일부만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논의의 대상이 된 조 례들은 최근 사회가 직면한 현안문제 및 입법수요에 대응한 조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목적의 달성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와 입법평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평가사례표 1]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2015. 4. 2.	Х		
	사업화촉진에 관한 조례	2013. 7. 2.	Λ		
1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입법체계 평기	ንት			
 • 조례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 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 반하는 내용은 없음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기본조례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 위임 적합성 평가 •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 이 파악되고 있는가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 학계나 언론계 등에서의 특별한 의견이 개진된 바 없음

기술촉진이나 이전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에서 기존 사업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 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 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 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조례 개선방향

- 기술이전사업은 서울특별시 산하의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바, 기
 술 이전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함
- 제4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 지만 이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할지 그리고 몇 년을 주기로 시행계획을 제 정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립시기와 주기를 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조례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
 칙의 제정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2015. 1. 2.	2015. 10. 8.		
2	위임근거	분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입법체계 평고	가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중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 반하는 내용은 없음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이 위임 적합성 평가 					
	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이 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1.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2.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3.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4.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5.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6.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며, 청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 결방안을 위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연계조항이 필요함
- O 위원회 구성
 - 동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가 2015년 7월 24일에 구성됨.
 -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조례에서는 청년이 최소 5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위원명단을 보면 10여명의 청년위원들이 있음.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직접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측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원구성으로 이해되지만, 당연직 위원들을 제외하면 전문가의 참여는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음. 위 조례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점에서는 청년이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사후 평가 대상이 아님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 개선방향

 기본조례라는 형식이 종합적인 집행을 위한 것이라면 조례의 효과적인 목 적달성을 위해 관련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정이 필요 함(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와의 관계 및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와의 관계 등)

[입법평가사례표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죄	스레	2015. 1. 2.	2015. 5. 14.		
2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입법체	계 평	7}			
 • 조례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 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 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 반하는 내용은 없음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 이 위임 적합성 평가 •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 다만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조례상의 역할이 다소 상이함 						
1.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청소년 고일보니하도의 하석회 2. 처소너하도의 하석회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3.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4.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지원 등 제공					
Ť	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					
7. 제	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 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 홍보 소년활동 축제 지원			

	· · · · · · · · · · · · ·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사업					
 법령상의 청소년수력활동의 인증제도 및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홍 보와 지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 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보완될 필요 					
사후 입법평가 기	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을	표」상 사후관리 기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은 내부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이나 서울특별 시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음 동 조례 제3조 제3항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에서 시행계획의 수립기한과 분석평가 보고기한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 이러한 조례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될 필요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사후 평가 대상이 아님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7 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조례 개선방향

- 시행계획의 수립기한과 분석평가 보고기한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상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 중에서 조례
 에서 빠진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입법평가사례표 4]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15. 4. 2.	Х		
4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입법체계 평	י			
- 이 노 전	∥ 제정 목적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 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 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	립기반 형성을 통려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 반하는 내용은 없음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가 없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 선도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음 					
] 적합성 평가 경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1.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2.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3.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4.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5.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6.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이 조례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이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조례는 향후 합리적인 분권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정책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후 입법평가의 대 상은 아니며 서울특별시 및 언론, 학계 등에서 조례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도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음.
 - 추진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만,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확인되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집행에 점검이 필요함

관계법령

- 없음

조례 개선방향

 특별한 개정방향은 없으며, 지방분권협의회의 구성 등이 향후 주요한 사후 관리 대상이 됨 [입법평가사례표 5]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5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4. 2.	X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X
입법체계 평가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 시립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과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장기적으로 시립대학교 운영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함 위임 적합성 평가 			
-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1.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2.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3.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4.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5.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6.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앞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봉사나 협력 활동에 대한 사례가 다른 지
 역에서의 국공립대학교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소통구축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
 후 평가의 대상이 됨

관계법령

- 없음

조례 개선방향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공헌활
 동의 주체가 시립대학교라는 점에서 지원조례로서의 한계를 지님

[입법평가사례표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5. 4. 2.	Х
6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입법체계 평고	7}	-
 • 조례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법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서 다소 어긋나는 외국인 주민이 사용되고 있으 며, 다문화 가족에서 가족의 범주도 불명확 것으로 평가됨 • 동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없음 • 동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으며, 특별한 구별 사항은 없음 • 위임 적합성 평가 			
	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이 서	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2. 인· 3. 주 견 4. 언·	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띠 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이 파악되고 있는가 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5	+른 조치는 이루어졌 , 반대 또는 적절하 평가는 분석되었는7	다는 등의 의

 6.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O 위원회 구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2014년 11월 14일에 개최함.
 다만 이후의 활동에 관한 소개는 현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규정된 바 없음
- 이와 함께 조례에는 없지만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2015년 하반기에 신 설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에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함
 께 사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동 조례가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됨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외국인 및 다문화 조례를 통합한 통합조례를 제정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의 대상이 됨. 다만 통합조례 이전의 외국인지원조례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대한 서울특별시 자체의 사후 평가보고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통합조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행정조직이나 예산 등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음. 통합조례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 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조례 개선방향 - 외국인 주민의 개념정의에서 나타나는 논리모순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여성, 복지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의 연계 규정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 1. 2.	Х
7	위임근거	분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입법체계 평고	יት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법률에서도 그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명확성원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이 위임 적합성 평가 -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이 저	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2. 인· 3. 주· 이 4. 언· 5. 시· 6. 시· 7. 평 8. 평	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띠 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파악되고 있는가 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 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 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기 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 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	·른 조치는 이루어졌 반대 또는 적절하다 평가는 분석되었는기 되었는가 였는가 · ·	가는 등의 의견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사회주택에 대한 사업을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받는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개념형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이 필요함
-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따라 서울 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 위원회 구성
 - 동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등은 아직 구성준비중에 있음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 후 평가의 대상이 됨

관계법령

- 없음

조례 개선방향

 조례의 기본개념이 다소 어려우며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사업이지만 관계 법령과의 체계적인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8]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1. 2.	Х
8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이버눼게 펴기			

ᆸᆸᆀᆀ

O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 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 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내용 없으나
 몇 몇 개념의 명칭 등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으며, 서울특별시의 독창적이며 선도적인 조례라 할 수 있음
- 위임 적합성 평가
 -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1.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2.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3.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4.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5.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6.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가 없는 안전감사에 관한 옴부즈만을 시행하는 것
 이 안전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O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 후 평가의 대상이 됨

관계법령

- 없음

조례 개선방향

법령 및 다른 지역에서의 조례에 없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 몇 개념들인 안전감사 옴부즈만,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개념 규정과 범주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임기나 비밀준수 등에 대한 내용의 보 완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9]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 2.	Х
9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의2	위임조례	Х
	입법체계 평	7}	

O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운영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고, 「대기환경 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제1조)

○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법의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음
-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 여러 지역에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대
 한 일부 비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과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음

○ 위임 적합성 평가

-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1.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2.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3.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4.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5.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6.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현재의 시행계획의 작성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함
- 다만 조례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미비되어 있어 효
 과적인 입법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됨

O 사후평가 관련 총평

- 시행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의 대상은 아님
- 동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적용대상이나 적용시간 그리고 해제사
 유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성격상 조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함
- 특히 다른 지역보다 교통체증이 심하여 환경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울지역에서 동 조례가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 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 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 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 "승용 차부제"라 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 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선방향

조례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내용 중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정책
 의 특성에 따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주기적인 정책평가규
 정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입법평가사례표 1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2015. 1. 2.	2015. 7. 30.
10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Х	자치조례	Х
	입법체계 평	የት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 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 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법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없음 다만 대중교통법 상의 규정들에 맞게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할 필 요성이 있음(예를 들어 법에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 17조 제1항에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이 위임 적합성 평가 -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0 "처	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2. 인· 3. 주· 건 4. 언·	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띠 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이 파악되고 있는가 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	·른 조치는 이루어졌 , 반대 또는 적절히 평가는 분석되었는7	다는 등의 의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대중교통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율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계발하는데 조례로서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O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 동 조례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등이 제3차에 걸쳐서 작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비공개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 후 평가 대상이 됨

관계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 3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 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 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조례 개선방향

 대중교통법에 내용과 비교하여 조례의 내용을 법률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입법평가사례표 11]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2015. 1. 2.	Х
11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위임조례	0
	입법체계 평기	የት	
 ○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점에서 국공립이라는 표현은 공립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동 조례와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나 모범조례가 제시되고 있지는 아니함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없음 시의장의 추천권한과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은 대법원 판례 및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위임 적합성 평가 법령에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이 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2. 인· 3. 주 견 4. 언· 5. 시 6. 시	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띠 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이 파악되고 있는가 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 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 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기	나른 조치는 이루어졌 , 반대 또는 적절하 평가는 분석되었는기 되었는가 였는가	다는 등의 의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서울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에서 위 조례를 통한 어린이집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동시에 국가적 단위에서의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사무이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가 제정된지 아직 3년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평가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임. 본 조례는 위임사항에 대한 설치 지원 조례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공립어린이 집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 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 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조례 개선방향

조례에 규정된 국공립이라는 표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임조례라는 점에서 설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되도록 종합적인 조례의 입법이 필요함 [입법평가사례표 1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1980. 4. 23.	2015. 5. 14.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12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	위임조례	0
	입법체계 평	가	
 조례 제정 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 하여「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O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아래의 지적 사항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음
 - 동 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다른 지역조례에 관한 내용도 크게 다르 지 않음

○ 위임 적합성 평가

 - 동 조례의 제5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의 지정권자는 시장(구청장에게 위임) 이므로, 조례로 그 지정요건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구청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위임사항을 집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례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하고 있음

O 사후평가 관련 총평

- 동 조례와 관련하여 위임조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후평가 내용은 없음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 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 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④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19.>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 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6.28.]
조례 개선방향
- 동 조례의 제5조 제1항은 구청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126

[입법평가사례표 1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연 번	조례명	제 정	최종개정
1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1980. 4. 23.	2015. 5. 14.
	위임근거	분 류	평가대상여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	위임조례	0
입법체계 평가			

O 조례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조례입안기준 부합성
 - 아래의 지적 사항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음
 - 위임사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되며, 명확성의 원
 칙,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반된 바 없음
 - 다른 지역에도 법령상의 위임을 받은 지역조례들이 있음
- 위임 적합성 평가
 -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8조, 제9조 제3항, 제10조 등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으로 보임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상 사후관리 기준

1.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2.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3.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 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4.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5.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6.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7.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8.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9.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O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위임조례라는 점에서 현재의 위법사항을 제외하고 위임에 충실한 법적 효력을 유지하여 도로법 목적에 이바지 하고 있음
- 사후평가 관련 총평
 - 사후평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음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 제 1 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 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 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 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 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 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 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조례 개선방향

- 위임사항들에 관하여 위반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제 2 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첫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 기준표의 내용상 항목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는 2002년부터 조례입안에 관하여 조례입안작성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에 관한 입법평가의 제도적 기초를 보여주 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안심사기준표와 그와 관련된 종합평가사의 작 성예가 현저히 적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례의 입안작성기준의 활용 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입안심사기준표의 111가지 항목이 상위법 및 입법의 필요성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사항들을 망라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심 사항목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평가항목은 있지만 평가척도가 없 다는 지적도 있다.30) 내용적으로는 위임입법과 자치입법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통합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특별시 조례입안심사기준표의 작성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평가부분 제1항 제3 호는 평가결과를 심사기준표의 삼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구체적으로 기 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형식을 따르는 예는 찾아 볼 수 없 었다. 오히려 지금의 작성형식은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에 맞게 간단히 가부만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례입안심사기준표의 본래 의도는 이렇게 체크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종합평가

³⁰⁾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입법평 가 연구 13-24-6,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3면.

제 2 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서의 형식은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례입안심사 기준표의 항목들 중 논거 내지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한 부분들을 구별 하여 서술란을 만들고, 기준표의 평가결과상 논의해야 될 부분에 관해 서는 종합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별표의 형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의회에서 조례입안심사기준표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우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조례입안심사기준표는 사실상 시청 내부 의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조례입법평가에 관해서 시청과 시의회 중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에 관한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청 내부의 자료로서 입안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공식 적인 문서로 남기기보다는 관련부서와 법령담당관의 협의 내지 합의 에 의해서 쟁점들이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재 매우 간단한 '법제심사조사'만 기재하고 평가기준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도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치조례 등 입법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내용 의 정당성 확보 등에 관해서는 시청 내부보다는 시의회에서 민주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성격에 따라 시의회가 입법평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있 어서 시의회에서도 조례입안심사기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즉, 시청이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조례제정이나 개정심사시 조례입안심사기준표가 활용 될 필요가 있다.

즉, 시청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이를 심사할 때, 시의회가 입안심사 기준표를 활용하여 매 항목마다 체크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조례의 사 전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조례입법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 며, 시청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화는 장기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의회의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

131

에는 조례입안심사기준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심사기준의 내용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조례입안시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다른 지역의 조례입법 평가의 운영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2002년부터 입안기준심사표가 활용되어 있지만 실제 시청내부 의 조례입안심사에서도 간단한 '법제심사조서'만이 작성되고 있다. 이 러한 조서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에서 조례입안심사기준표 와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입법자료의 보관과 공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자료의 보관과 공개는 시의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 다. 시의회의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는 향후 조례의 개정 등에 중 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 이외에도 논거가 되는 입법자료 등도 함께 보관·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조례에 관한 사전 및 사 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참고해본다 면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적어도 시의회에서 조례에 관한 사전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조례와 위임조례 모두 평가주기를 정하는 일몰제 성격의 사후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제정 이나 개정 이후 조례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예상 치 못한 결과와 부작용 등이 있는지 그리고 규제와 지원에 대한 실효 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조례입법평가의 도입과 함께 현재 각 관련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규제, 부패, 성별, 비용 등의 평가를 함께 묶어서 종합 적으로 볼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일반적이면서 종합적인 입법평가제도 의 도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32

참고문헌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4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 전기성, 입법심사기준표의 제정과 발전을 위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 2권, 한국입법학회, 2002
-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입법평가 연구 13-24-6, 한국법제연구원, 2012

서울시, 7개 분야 전문가 「시민참여옴부즈만」 첫 출범, 보도자료, 2013.1.7

-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5544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http://legal.seoul.go.kr/legal/front/ page/knowledge.html?pAct=lawinfo_view&pNo=3&pTreeOpenId=l awinfo_list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ategory/12074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program/ 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generation_num=009 &startDate=2014-07-01&endDate=2015-09-08&startDay=&endDay=, 2015. 9. 8 기준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www.sy0404.or.kr/